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520000-000591-14

GOVP1200809457

L 343.07692 ㄱ174ㄱ

L
343.07692
ㄱ174ㄱ
2007

기르는어업육성법령

2007

(어업) 150
(법령) 650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01250442



2008.5.01

Ⅰ 목 차 Ⅰ

- 기르는 어업육성법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대비표 5
-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69
-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 서식 75

목 차

쪽번호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7	제1장 총칙		
7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7	제2조 (정의)		
9	제2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9	제3조 (기르는어업심의회)	제2조 (기르는어업심의회 운영 등)	
11	제4조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12	제5조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		
13	제6조 (자금의 보조 등)	제3조 (자금 또는 비용의 보조 등 대상사업)	
15	제7조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제2조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
17	제8조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조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19	제9조 (수산자원조성사업)	제5조 (수산자원의 조성 등에 관한 연구진흥)	
20	제1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등)		
21	제11조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22	제12조 (수산자원조성금 등)	제6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제3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25		제7조 (조성금의 부과 기준)	
25		제8조 (조성금의 감액대상 등)	

쪽번호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26		제9조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 방법 등)	
27		제10조 (조성금의 직권조정)	
27		제11조 (대장의 기록관리)	
27	제13조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제12조 (대행 또는 위탁대상사업)	
29	제3장 수산생물 진료		
29	제14조 (면허)		제4조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교부)
30			제5조 (면허증의 재교부 등)
32	제15조 (결격사유)		
33	제16조 (면허증 등)		제6조 (면허대장 기재사항)
33	제17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제13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위원회)	
35		제14조 (시험관리기관)	
36		제15조 (시험문제의 출제 등)	
37		제16조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7		제17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37	제18조 (응시자격)	제18조 (응시원서)	제7조 (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38			제8조 (면허시험 응시대상 학과)
38	제19조 (수험자의 부정 행위)	제19조 (합격자 결정 및 발표)	
39	제2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제20조 (관리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40	제21조 (진료의 거부금지)		
40	제22조 (진단서 등)		제9조 (진단서의 기재사항)

쪽번호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41			제10조 (처방전의 기재사항)
41			제11조 (폐사증명서의 교부)
42			제12조 (증명서 등의 교부)
42	제23조 (진료부 및 검안부)		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43	제24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제21조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제14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
46	제25조 (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제15조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47	제26조 (휴업·폐업의 신고)		제16조 (휴업·폐업의 신고서)
48	제27조 (공수산질병관리사)		제17조 (공수산질병관리사)
49	제28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의 정지)		제18조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52	제29조 (업무정지)		제19조 (신고필증의 제출 등)
54	제4장 보 칙		
54	제30조 (기초조사)	제22조 (기초조사의 내용 등)	
56	제31조 (지도와 명령)		
56	제32조 (보고 및 업무감독)		제20조 (보고)
56			제21조 (수수료)
57	제33조 (청문)		
57	제34조 (권한의 범위)	제23조 (권한의 위임)	
58	제5장 벌 칙		
58	제35조 (벌칙)		
59	제36조 (과태료)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61	부 칙	부 칙	부 칙
69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75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여 백

기르는 어업육성법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대비표

여 백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7호</p> <p>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산생물의 양식을 활성화하고 수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의 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르는어업"이라 함은 수산자원 조성,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수산자원의 관리 및 수산생물의 양식을 말한다. 2. "수산자원조성"이라 함은 일정한 	<p>일부개정 2007.7.27 대통령령 제20203호</p> <p>제1조 (목적) 이 영은 「기르는 어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p>	<p>일부개정 2007.7.27 해양수산부령 제378호</p>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르는 어업육성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6, 2007.7.27></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수역에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묘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p> <p>3. "바다목장"이라 함은 일정한 해역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번식하게 하고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p> <p>4. "수산생물"이라 함은 기르는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과 그 알 또는 포자를 말한다.</p> <p>5. "수산질병관리사"라 함은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는 자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6. "수산생물진료업"이라 함은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영업을 말한다.</p> <p>제2장 기르는어업의 육성</p> <p>제3조 (기르는어업심의회) ①기르는 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기르는어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p>	<p>제2조 (기르는어업심의회 운영 등)</p> <p>① 「기르는 어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르는어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심의회 회의록을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7.27></p> <p>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부장관이 지정하고자 하는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p> <p>3. 기르는어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기르는어업 발전과 관련 되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③심의회는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7.1.26></p> <p>1.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기르는어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인</p>	<p>야 한다.</p> <p>③심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1인</p> <p>3. 양식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p> <p>4. 시·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기르는어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인</p> <p>5. 지역어업인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p> <p>⑤심의회는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p> <p>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르는어업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5. 어장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p>제5조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p> <p>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 확대 및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2. 수산생물 양식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5. 수산생물 양식을 위한 어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6조 (자금의 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조성 또는 양식어장의 개발·확충 등 기르는어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제3조 (자금 또는 비용의 보조 등 대상 사업) ①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금이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사업</p> <p>2. 수산종묘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p> <p>3.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부자(浮子)·사료제조기·그물·변온설비 및 산소공급장치 등 양식기자재의 공급사업</p> <p>4.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p> <p>5. 그 밖에 새로운 양식방법으로의 전환 등 기르는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금이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7조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①행정관청(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르는어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지구에서 시행되는 기르는어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p>		<p>제2조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p> <p>① 「기르는 어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7.1.16, 2007.7.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다목장 또는 인공어초 시설에 적합한 해역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의 어장을 양식어장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한 해역 3.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에 적합한 지역 4. 그 밖에 기르는어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해역 또는 지역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지정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p> <p>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르는어업 개발지구</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8조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르는어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사업 2. 외국으로부터의 기르는어업에 관한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 기르는어업에 관한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4. 그 밖에 기르는어업에 관한 기술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대상 기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식용 사료의 제조·개발 기술 2. 바이러스 백신 등 수산용 약제의 제조·개발 기술 3. 새로운 품종에 대한 양식 또는 종묘 생산 기술 4.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 관련 새로운 기술 5. 그 밖에 기르는어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로운 기술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보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한 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③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과제명 및 연구팀 구성 2. 과제수행목표 3. 과제수행능력 4. 과제수행 소요비용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과제의 중복성 여부 2.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과제수행능력 3. 과제의 우수성, 중요성 및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9조 (수산자원조성사업) ①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해조장의 설치사업 4. 수산종묘의 생산 및 방류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자원조성에 필요한 사업 <p>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방법·시설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p>	<p>⑤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5조 (수산자원의 조성 등에 관한 연구진흥)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소속 시험연구·기술보급기관, 관계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조성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소속 시험연구·기술보급기관, 관계연구기관, 대학, 관계전문가 및 어업인 등에게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흥하기 위하여</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1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등)</p> <p>①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관리수면"이라 한다)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그 관리·이용규정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정년으로 퇴직한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연구관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연구관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면의 지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이용규정을 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수면의 지정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시·도지사는 관리수면으로 존속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⑤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1조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p> <p>①관리수면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립행위 2. 준설행위 3. 공작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4.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p>②관리수면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 (수산자원조성금 등) ①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p>	<p>제6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①법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p>	<p>제3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7.4.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5. 「수산업법」 제7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p>원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면제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맨손어업·나잠어업 및 투망어업 2. 5헥타르 미만의 축제식양식어업이나 1천제곱미터 미만의 축제식이 아닌 육상양식어업 3.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종묘생산어업 <p>②법 제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성금의 면제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형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10헥타르 미만의 해조류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패류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어업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 및 침하식양식어업 다. 10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어업 	<p>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2007.7.27></p> <p>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징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징수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 다. <개정 2007.1.26, 2007.4.11></p> <p>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제15조 및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해상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p> <p>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p> <p>3.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4. 「수산업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중 소량의 수</p>	<p>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어류등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p> <p>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어업</p> <p>나. 5헥타르 미만의 축제식양식어업 또는 바닥식양식어업</p> <p>다.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p> <p>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복합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p> <p>가. 5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어업</p> <p>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 또는 혼합양식어업</p> <p>6. 양식방법별로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양식어업과 같은 규모의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p> <p>7. 무동력어선과 총톤수 5톤(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6.94톤) 미만</p>	<p>실 2007.7.27></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신고한 자</p> <p>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면적 또는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p> <p>③행정관청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p> <p>④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수산업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수산자원보</p>	<p>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어업·근해어업 및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 경우 어선의 총톤수에는 부속선중 가공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p> <p>8. 3헥타르 미만의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9. 3헥타르(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10헥타르) 미만의 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제7조 (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8조 (조성금의 감액대상 등) ①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기간중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피해정도가 30</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호에 미친 영향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07.4.11></p> <p>⑤행정관청은 재해를 당한 어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⑥조성금의 징수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성금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⑧조성금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p>	<p>퍼센트 이상으로서 피해복구지원을 받은 어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7></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자에 대한 조성금의 세부적인 감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9조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p> <p>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조성금을 부과한다.</p> <p>②행정관청이 조성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조성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13조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①행정관청은 수산자원</p>	<p>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납부기한내에 조성금을 납부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0조 (조성금의 직권조정) ①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p>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부과 또는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1조 (대장의 기록관리)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징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12조 (대행 또는 위탁대상사업) 법</p> <p>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나 당해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당해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p>	<p>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어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해조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4. 수산종묘의 생산·방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5. 수산자원조성관련 시설·장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업 6. 수산자원의 적정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수단을 조절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 및 연안수역정화관련 보조사업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장 수산생물진료</p> <p>제14조 (면허) 수산질병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제4조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교부)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관리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법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로 4센티미터) 2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시험합격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5조 (면허증의 재교부 등) 관리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잃어버린 경우 :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1매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당해 면허증과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1매 3.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당해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 및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1매 4. 면허를 재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1매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1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질환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마약·대마 그 밖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이 법, 「수의사법」, 「수산업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의료법」, 「약사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된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제16조 (면허증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부여 한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기재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면허대장에의 기재와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위원회)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질병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 국가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p>	<p>제6조 (면허대장 기재사항)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그 성명·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성별) 3.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면허증을 재교부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한 때에는 그 사유
<p>제17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①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p> <p>②관리사 국가시험은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산생명의학과 관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수산생물의 양식</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p> <p>④관리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어업자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양수산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수산생물질병학 및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7.7.27></p> <p>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⑤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시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4조 (시험관리기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p> <p>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를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④시험관리기관의 시험관리요령, 보고사항 그 밖에 시험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p> <p>제15조 (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6조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①관리</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18조 (응시자격) 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학(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수산생명</p>	<p>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p> <p>②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p> <p>③과목별 출제비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7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관리사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 30일전까지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원서제출기간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8조 (응시원서) ①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에 법 제18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표시하는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p>	<p>제7조 (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 국가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p> <p>제8조 (면허시험 응시대상 학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생</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의학과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대학의 학과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한다.</p> <p>제19조 (수험자의 부정 행위) ①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자 또는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연속하여 실시되는 관리사 국가 시험에 2회를 응시할 수 없다.</p> <p>제20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관</p>	<p>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시험일 전날까지 졸업증명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9조 (합격자 결정 및 발표) ①관리사 국가시험은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p> <p>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p> <p>제20조 (관리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p>	<p>물의 질병관련 학과는 수산생명의학과(수산생명의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7.27></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리사가 아닌 자는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의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행위 	<p>진료의 범위) 법 제2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질병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수산질병관련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진료행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양식어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진료행위 3. 어촌지도 또는 수산연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할지역에서 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4. 자기가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행위 5.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섬 또는 벽지에서 이웃의 양식어가가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행하여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21조 (진료의 거부금지) 수산생물 진료업을 영위하는 관리사는 수산생물의 진료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2조 (진단서 등) ①관리사는 자기가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검안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製劑)를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폐사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때에는 진료하지 아니한 관리사가 폐사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p> <p>②관리사는 그가 진료한 수산생물에 대한 진단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p>	<p>지는 다른 양식어가의 무상진료행위</p>	<p>제9조 (진단서의 기재사항) 관리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생물의 품종·특징 및 중량 2. 병명 및 진단소견 3. 발병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연월일 6.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7. 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개설장소·전화번호 8. 관리사의 성명·면허번호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된다.		<p>제10조 (처방전의 기재사항) 관리사가 교부하는 처방전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생물의 품종·특징 및 중량 2.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약의 명칭·성분분량·용법·용량·보관방법·사용기간 4.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5. 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개설장소·전화번호 6. 관리사의 성명·면허번호 <p>제11조 (폐사증명서의 교부) 법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진료하지 아니한 관리사가 폐사(斃死)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사원인과 폐사일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청한</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23조 (진료부 및 검안부) 관리사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비치하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경우를 말한다.</p> <p>제12조 (증명서 등의 교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가 교부하는 증명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안(檢案)서 : 별지 제6호서식 2. 폐사증명서 : 별지 제7호서식 <p>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료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산생물의 품종·특징 및 중량 나. 진료연월일 다.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 주요증상 및 임상실험 결과 마. 사육환경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24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① 누구든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p> <p>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7.1.26></p>	<p>제21조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바. 치료방법(처방과 처치)</p> <p>2. 검안부</p> <p>가. 수산생물의 품종·특징 및 중량</p> <p>나. 검안연월일</p> <p>다.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p> <p>라. 폐사연월일(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연월일)</p> <p>마. 폐사의 원인과 장소</p> <p>바. 사체의 상태</p> <p>사. 해부의 주요소견</p> <p>제14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장</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1. 관리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p> <p>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p> <p>3. 수산생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p> <p>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련학을 전공하는 학교</p> <p>5.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p> <p>③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개정 2007.1.26></p>		<p>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2007.7.27></p> <p>1. 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p> <p>2. 관리자(개설자 및 종사자를 말한다)의 면허증 사본 1부</p> <p>3. 제2호의 관리사가 법 제1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p> <p>4.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p> <p>④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p> <p>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의</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25조 (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①제 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경우로서 개설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수산질병관리원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관리사중에서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②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함에 있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개정 2006.6.26, 2007.7.27></p> <p>제15조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필요한 검사·투약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 3. 다른 수산질병관리원을 이용하려는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수산질병관리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4. 소독 등 수산질병관리원 내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26조 (휴업·폐업의 신고) 수산질병 관리원의 개설자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p>		<p>수산생물의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료하여 수산생물의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p> <p>5.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 및 처치 등을 하는 때에 그 위험성이나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p> <p>6.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수산생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p> <p>[전문개정 2007.1.16]</p> <p>제16조 (휴업·폐업의 신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 관리원의 개설자가 수산생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p> <p>제27조 (공수산질병관리사) ①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생 물진료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 하기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 하고 있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 무하는 관리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 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생물의 진료 2. 수산생물질병의 조사연구 3.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수산생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p>에 수산질병관리원개설 신고필증 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p> <p>제17조 (공수산질병관리사) ①해 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공수산질병관리사 로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시·도지사는 공수산질병관리사 를 위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도지사가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 각 호의 업무를 위촉받은 관리사 또는 수의사(이하 "공관리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행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관리사의 위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관리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의 정지)</p> <p>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p>		<p>제18조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p> <p>①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p> <p>②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정 2007.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수산생물 진료행위를 행한 때 4.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3회 이상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07.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 		<p>[전문개정 2007.7.27]</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때</p> <p>3.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단서·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때</p> <p>4.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행한 때</p> <p>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p> <p>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거부한 때</p> <p>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한 때</p> <p>8.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p> <p>9. 수산생명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p> <p>10. 학위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9호의</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p> <p>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 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 그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p> <p>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p> <p>제29조 (업무정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p>		<p>제19조 (신고필증의 제출 등) ①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가 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 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필증을 시</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부 및 검안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2.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3. 제2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때 5.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상 휴업한 때 6.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7.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 <p>[전문개정 2007.1.26]</p>		<p>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생물 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정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신고필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7.7.27></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4장 보칙</p> <p>제30조 (기초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 (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된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의 관리 및 그 효과에 관한 사항 2. 바다목장이나 인공어초를 설치하는데 적당한 수역에 관한 사항 3. 양식어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르는어업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p>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31조 (지도와 명령)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생물의 진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p>	<p>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통보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p>④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인정하는 때 또는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26></p> <p>제32조 (보고 및 업무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업무상황·시설·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20조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그 휴업·폐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p> <p>제21조 (수수료) ①관리사 면허증 재교부 및 면허의 재부여수수료는 2천원, 관리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만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33조 (청문) 해양수산부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23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지도와 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관리사 면허증재교부 및 면허의 재부여 수수료와 관리사 국가시험의 응시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7></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5장 벌칙</p> <p>제3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자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생물을 진료한 자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 <p>제36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p>	<p>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p>	<p>제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자</p> <p>2. 제2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자</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산생물의 진료를 거부한 자</p> <p>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가 진료하지 아니하고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자</p>	<p>도지사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6></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p> <p>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자</p> <p>5. 제26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1.26></p> <p>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26></p> <p>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바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p> <p>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5조제1항, 제36조 및 부칙 제4조제4항·제5항의 규정은 공포</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내지 제21조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법시</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면허시험응시대상학과에</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산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p> <p>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p>	<p>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10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p> <p>②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 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를 삭제한다.</p> <p>부 칙 <제18881호, 2005.6.23></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부 칙 <제19513호, 2006.6.12></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4조 생략</p>	<p>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학과(주전공을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의 학과(주전공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학사의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족병리학과 2. 어병학과 3. 해양생명의학과 4. 수산생명의학 주전공 5. 해양생명의학 주전공 <p>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4조와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 수입중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 특성 및 점·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③어업협정체결에 따른어업인등의 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p> <p>④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부 칙 <제20203호, 2007.7.27></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지 제4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p> <p>②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3조와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p> <p>부 칙 <제277호, 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299호, 2005.7.1></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부 칙 <제340호, 2006.6.2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p> <p>⑤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6제3항 단서중 "獸醫師"를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⑤기르는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p>		<p>부 칙 <제355호, 2007.1.1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378호, 2007.7.27></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부 칙 <제7796호, 2005.12.29></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부 칙 <제8298호, 2007.1.26></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수산자원조성금에 대한 적용례 등) ①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②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게 부과된 수산자원조성금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른다.</p> <p>제3조 (수산물병관리사의 면허취소·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4호·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29조제1호·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 (수산물병관리원의 개설·휴업·폐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한 수산물병관리원의 개설·휴업·폐업의 신고는 제24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 <제8377호, 2007.4.11></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p>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p>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 칙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 년 7월 27일부터 시행……<생략>…… 한다.</p> <p>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16조 생략</p>		

여 백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여 백

[별표 1] <개정 2007.7.27>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구 분	부 과 금 액	비 고
○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 어류·패류 등 양식어업 : 헥타르당 10만원 ○ 정치망어업·해조류·복합양식어업 : 헥타르당 3만원	○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총부과금액=(부과금액×연장받은 연수)÷10
○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 연안어업·이동성구획어업·근해어업 : 어선 톤당 5천원 ○ 정치성구획어업 : 헥타르당 3만원 ○ 해상종묘생산어업 : 헥타르당 10만원	○ 부속선이 있는 어업의 경우 가공선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은 포함함
○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축제식 양식어업은 제외한다)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축제식 종묘생산어업은 제외한다) 허가를 받은 자	○ 헥타르당 500만원(해조류 종묘생산어업은 200만원)	
○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축제식 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 중 축제식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	○ 헥타르당 5만원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 헥타르당 21만 6천원	
○ 「수산업법」 제7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자 -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하여 같은 시행령 제30조에	○ 건당 300만원	○ 「수산업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한

따라 처벌받은 자 -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하여 같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 -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하여 같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	○ 건당 250만원 ○ 건당 200만원	경우로 한정함
---	------------------------------	---------

비고 : 해당 어선의 총톤수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그 톤수에 0.72를 곱하여 환산한 톤수로 한다.

[별표 2]

조성금의 감액기준(제8조제2항관련)

재해피해정도	감경률	비 고
50% 미만 (어선의 경우 반과)	30%	조성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로 당해 어업에 대하여 2회이상 피해복구지원을 받은 어업자의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50% 이상 (어선의 경우 전과)	50%	

[별표 3]

수산질병관리사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제16조제2항관련)

시험과목	시험범위
1.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의 양식, 수산생물의 구조와 기능, 수산생물의 질병발생 인자, 수산용의약품, 수산생물과 공중보건
2. 수산생물임상의학	질병예방, 질병진찰 및 진단, 감염성질병, 비감염성질병
3. 수산질병관련 법규	기르는어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약사법중 동물용 의약품관련 규정

[별표 4]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제21조관련)

개 설 자 별	시 설 기 준
수산질병관리사	1. 진료실 : 진료대 등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2. 처방실 : 소독장비, 약제기구 등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3. 그 밖에 수산질병관리원내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등과 장비를 갖추는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수산생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수산질병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1. 진료실 : 진료대 등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2. 처치실 : 수산생물 진료에 필요한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다만,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위해 방호시설을 함께 갖추는 것 3. 조제실 :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4. 임상병리검사실 : 현미경·세균배양기·항온수조·굴절계·마이크로피펫·교반기·전자저울·수질측정기·원심분리기 및 멸균기를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5. 기동장비 및 기동장비 보관창고를 갖추는 것 6. 기 타 수산질병관리원내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등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산질병관리원의 건물 총면적은 기동장비 보관창고를 제외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진료실(임상병리검사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 고 : 위 표의 시설기준중 진료실과 처치실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설하는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중 진료실의 면적기준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5]

과태료금액의 산정기준(제24조제3항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 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자	법 제36조 제1항제1호	300
2. 법 제2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자	법 제36조 제1항제2호	200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산생물의 진료를 거부한 자	법 제36조 제2항제1호	100
4.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가 진료하지 아니하고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자	법 제36조 제2항제2호	100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36조 제2항제3호	50
6.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 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자	법 제36조 제2항제4호	50
7. 법 제26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 관리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6조 제2항제5호	20

비 고 : 행정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 표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 서식**

여 백

[별 표] <개정 2007.7.27>

행정처분기준(제18조관련)

I. 일반기준

1. 하나의 위반행위가 수산질병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와 수산질병관리원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사에 대하여만 처분한다.
2.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면허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 이내에 개별기준 동일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5. 행정처분권자는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한 방역 및 진료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II.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가. 면허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경우 :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이내
 - 나. 면허취소의 경우 : 면허정지 6월 이상(관리사가 법 제1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II. 개별기준

1. 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1차	2차	3차
1.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28조 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자신의 관리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2호	면허정지 1년	면허취소	
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수산생물 진료행위를 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3호	면허취소		
4. 2년 내에 3회 이상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법 제28조 제1항제4호	면허취소		
5.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1호	면허정지 90일	면허정지 180일	면허정지 1년

6.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2호	면허정지 180일	면허정지 9개월	면허정지 1년
7.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3호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90일	면허정지 1년
8.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4호	면허정지 180일	면허정지 9개월	면허정지 1년
9.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5호	면허정지 15일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180일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거부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6호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90일	면허정지 180일
1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7호	면허정지 180일	면허정지 9개월	면허정지 1년
1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8호	면허정지 180일	면허정지 9개월	면허정지 1년
13. 수산생명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9호	면허정지 15일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180일
14. 학위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10호	면허정지 15일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180일

2.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1차	2차	3차
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및 검안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29조 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180일
2.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29조 제2호	경고	시설보완 시까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년
3.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9조 제3호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업무정지 1년

4.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때	법 제29조 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180일
5.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상 휴업한 때	법 제29조 제5호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업무정지 1년
6.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29조 제6호	경고	업무정지 180일	업무정지 1년
7.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	법 제29조 제7호	업무정지 90일	업무정지 180일	업무정지 1년

(수납기관보관용)

(시·도, 시·군·구 통보용)

(납부자 보관용)


수사자원조성금납부고지서				수사자원조성금납부고지서				수사자원조성금영수증			
납부 의무 자	①면허·허가 신고번호		⑤연 도	납부 의무 자	①면허·허가 신고번호		⑤연 도	납부 의무 자	①면허·허가 신고번호		⑤연 도
	②시설물 소재지				②시설물 소재지				②시설물 소재지		
	③성명		⑥제 호		③성명		⑥제 호		③성명		⑥제 호
	④주소				④주소				④주소		
⑦부과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부과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부과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납부 기한			⑧납부 기한			⑧납부 기한					
조성금내역				조성금내역				조성금내역			
⑨총 계	⑩금회조성금	⑪미수조성금		⑨총 계	⑩금회조성금	⑪미수조성금		⑨총 계	⑩금회조성금	⑪미수조성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 부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일 부인				수납일 부인	취급자인		

297mm×210mm(보존용지(1종) 120g/m²)

유의사항

1. 납기내에 수사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당하게 됩니다.
2. 수산자원조성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수로 기재된 수산자원조성금이 있는 납부의무자는 미수된 수산자원조성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장소는 수산업협동조합·은행 또는 우체국입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산자원조성금은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금액을 산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1.16>

면허번호 제 호	수산질병관리사면허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초교부일자	년	월	일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질병관리사를 면허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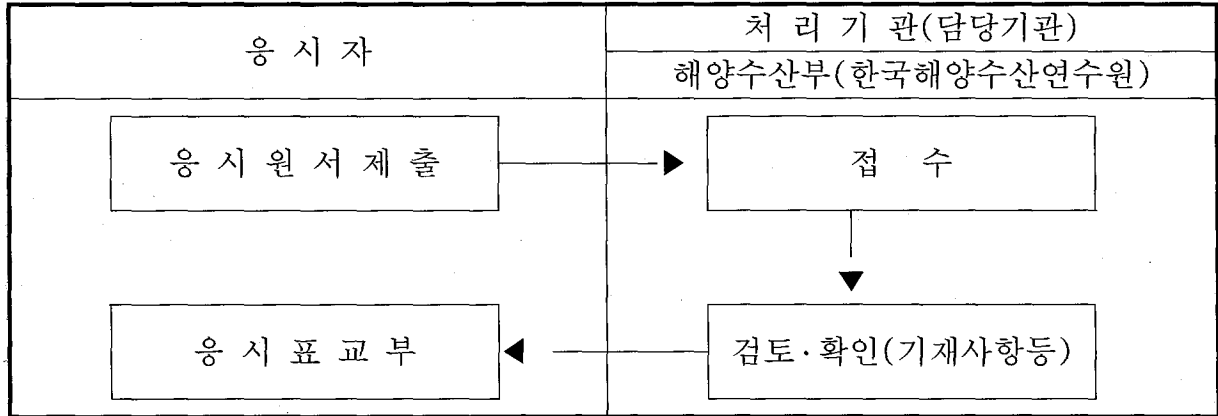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수산물질병관리사면허증 <input type="checkbox"/> 재교부 <input type="checkbox"/> 재부여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면 허 번 호		②면 허 일 자		년 월 일	
신청인	③	한글	④주민등록번호		
	성명	한자			
	⑤주 소				
	⑥자 격		제 회 수산물질병관리사 국가시험 합격		
⑦출신학교		⑧졸업일자		년 월 일	
⑨재교부 및 재부여 사유		<input type="checkbox"/> 수산물질병관리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됨에 따른 재교부 <input type="checkbox"/> 수산물질병관리사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에 따른 재교부 <input type="checkbox"/> 면허의 재부여			
⑩잃어버린 경위(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교부(면허의 재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잃어버린 경우 :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 (3cm×4cm) 1매				2,000원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못쓰게 된 면허증과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3cm×4cm) 1매				(수입인지붙이는 난)	
3.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당해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 및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3cm×4cm) 1매					
4. 면허를 재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3cm×4cm) 1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응시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절 취 선-----

응시자 주의사항

1.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좌석에 앉고 책상 오른쪽에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독관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2. 응시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
3. 필기구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검정색)만 사용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1.16>

검 안 서					
수산생물 소유자 (관리인)	성명				
	주소				
수산생물의 특징					
품종		중량		발병연월일	년 월 일
폐사일시				폐사장소	
검안연월일					
임상진단명					
폐사의 원인					
사체의 상태					
주요소견 및 특기사항					
<p>「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수산질병관리원명칭 : 소재지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번호 : 수산질병관리사성명 :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